

2017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0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어내며,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진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습화된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처한 각종 환경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안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하며, 예술적 융성과 사회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켜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1.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연수 사업이나 활동
3.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4.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법 제4조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 사업이나 활동
6.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7.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8.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9.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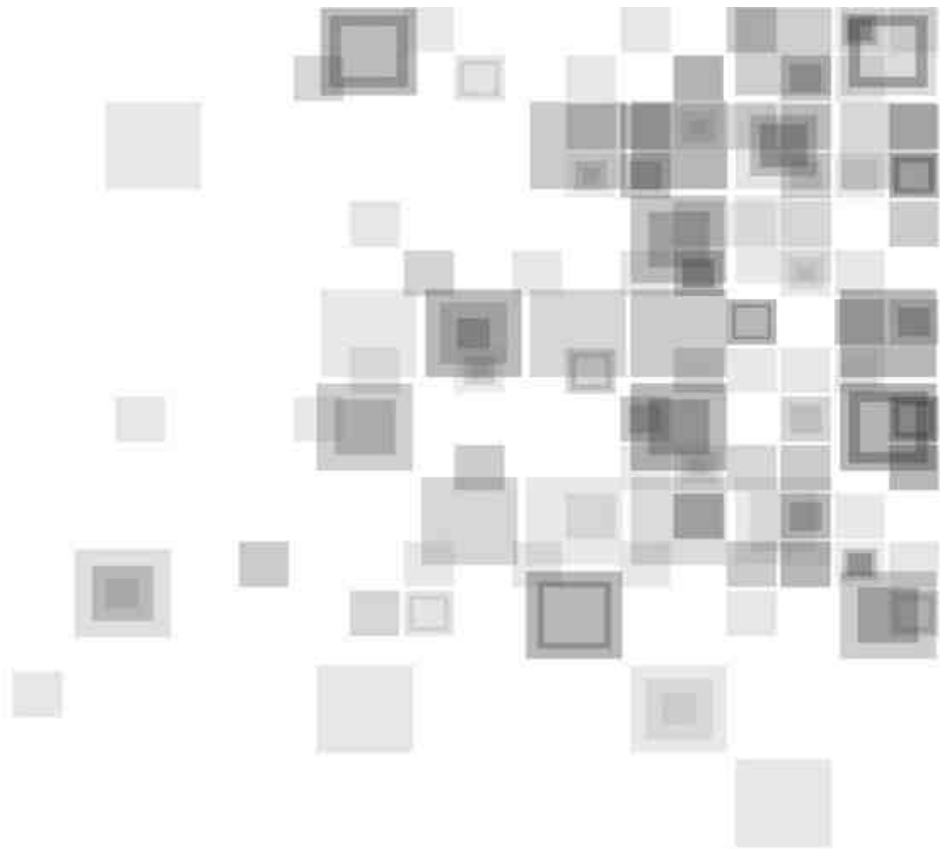
2017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 안내

Contents

| | |
|----------------------------------|----|
| 1.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안내 | 01 |
| 2.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 04 |
| 2-1. 공모 안내 | 05 |
| 2-2. 지출예산 작성 요령 | 10 |
| 3.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문학순회) | 14 |
| 3-1. 공모 안내 | 15 |
| 3-2. 지출예산 작성 요령 | 20 |

2017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 공모 안내

1.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안내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안내

○ 사업목적

-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비 : 21,119백만원

○ 사업내용 :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사업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주관 : 선정 예술단체 및 운영단체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협력 : 행정안전자치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 농협중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 지원대상 : 경제·사회·지리·특수 소외계층과 순수예술 관람경험의 기회가 적은 문화 소외계층

- . 경제적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 . 사회적 소외계층 : 장애인, 노인,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이용자, 특수학교, 의료시설, 외국인노동자 등
- . 지리적 소외계층 : 읍·면·동·도서(섬)·산간벽지, 공단지역 주민
- . 특수 소외계층 :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새터민, 서해5도 주민 등
- . 문화 소외계층 : 연간 순수예술 관람경험이 적은 문화 소외계층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추진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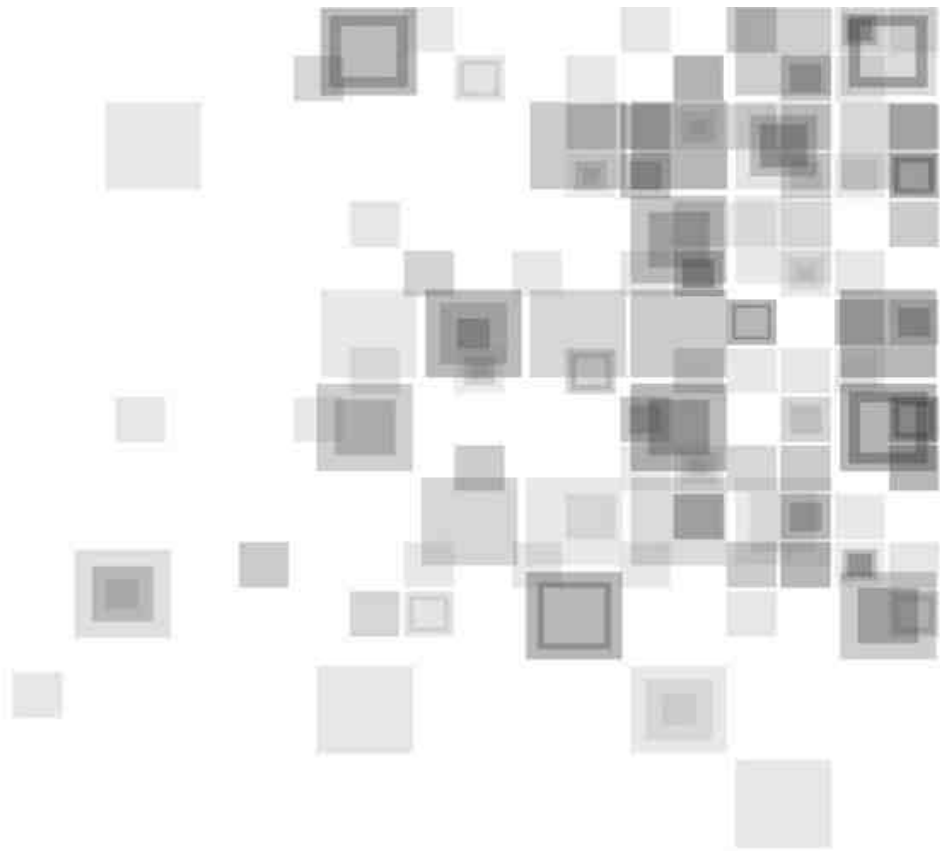
-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 및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개시
- 2008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기관 협조체계 도입
- 2011년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 개편
- 2013년 정부 국정과제((109-4)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로 사업 확대 추진
- 2014년 노인, 청소년층 등 수요층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도입
- 2016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모사업과 수요 기반형, 수요 창출형 특성화 프로그램 기획사업 전면 확대 실시

사업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기금의 설치),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3항 4호 4. 문화·예술 진흥사업

2017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 공모 안내

2.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공모 안내

○ 사업목적

-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
- 순회시설 접수처(순회대상처)를 포함하여 해당 유형의 수혜대상을 직접 발굴하고,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 개발하여 순회활동으로 추진

○ 지원신청자격

- 지역 단위 문화예술 순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단체
 - 문화예술 관련협회 및 단체, 예술단체, 기획사, 산학협력단, 광역·기초 지역권 문화재단, 광역·기초 지역권의 공공문화기관 등
 - ※ **사업에 참여하는 기획운영 전담인력은 3년 이상 유경험자에 한함(경력증빙 필수)**
 -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만 지원가능 합니다.
 - 최근 2년간 유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
 -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지침' 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에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사업

- 2017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동일단체의 동일사업)
- 2017년 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개인
- 직전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 직전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내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함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함.
 - ※ 기존 지원사업이 해당 사업년도 내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지침」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 등 공공연하게 표절시비가 있는 단체·개인

○ 지원대상사업

- 지원대상 프로그램

-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향수 기회 제공이란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수혜대상 및 사업내용(예시) | 선정 단체수 | 단체별 예산안 | 단체별 순회횟수 |
|----------|--|--------|---------|----------|
| 이웃사촌순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농산어촌을 포함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연관람, 문화예술 체험, 전시 등을 결합한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선택) 찾아가는 서비스와 모셔오는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주민 참여 유도 프로그램 ○ (선택) 지역문화공간 등을 활용한 공연, 체험,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 10개 | 1~4억 원 | 50회 |
| 대규모 공연순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자체 공동주관 등의 협력을 통하여 소외지역의 실·내외 공연장을 중심으로 대·중규모 공연 프로그램 제공 | 2개 | 3~5억 원 | 20회 |
| 도서지역순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5도 및 도서지역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연계 프로그램 | 2개 | 2~3억 원 | 40회 |
| 성과확산순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성과확산 프로그램 운영(역량 강화 워크숍 및 사례공유, 지역별 성과확산 프로그램) ○ 일정 기간 내 대국민 성과확산 행사 운영 | 1개 | 4~6억 원 | 30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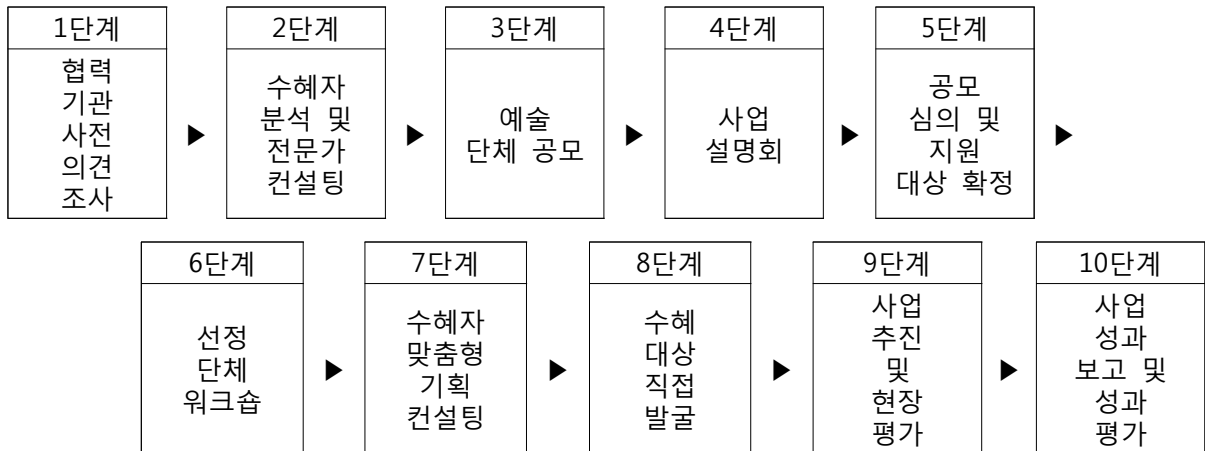
※ 예시로 제시된 사업내용 외의 국민의 문화소외를 해소할 사업 추가 제안 가능

※ 선정단체수와 단체별 예산안은 조정 발생 가능

○ 운영단체의 역할(예시)

| 구분 | 역할 | 세부내용 |
|------|-----------------|--|
| 준비 | 수혜자 특성 이해 | ○ 기획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문가, 순회대상처 담당자 등의 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대상, 장소 특성을 파악 |
| | 프로그램 기획 | ○ 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정·보완 |
| | 순회대상처 발굴 | ○ 신청 순회대상처 외 추가 순회대상처 발굴 진행 |
| | 사전답사 | ○ 사전답사 등을 통한 수요조사 및 환경 분석 |
| | 홍보계획 수립 | ○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
| 추진 | 일정협의 및 안내 | ○ 순회대상처별 프로그램 추진 일정 협의 및 프로그램 내용 안내 |
| | 공연 프로그램 제공 | ○ 대상, 장소 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
| | 모니터링 협조 | ○ 연중 사업 담당자 및 전문가 등 모니터링 진행 |
| | 프로그램 평가 협조 및 독려 | ○ 연중 순회대상처 평가 진행을 위하여 안내 및 독려 |
| | 사업 홍보 추진 | ○ 연중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도자료 등 배포 협조 및 독려 |
| 성과공유 | 사업성과 확산 및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 네트워크를 위한 성과확산순회 참여 협조 ○ 성과확산을 위한 워크숍 참석 |
|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 사업 추진 결과 보고 및 정산 완료 |

○ 추진절차



※ 순회대상처는 사전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단체가 발굴하고 예술위와의 협의하여 결정

○ 심의기준

- 심의고려사항

- 유형별 순회대상처의 특수함을 고려한 수혜대상 발굴과 참여대상자 동기부여 방안
- 대상자 및 프로그램 기획의 다양성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
- 지속적인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역량 등

- 지원심의기준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 사업계획 (프로그램의 충실성과 작품성(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신청한 프로그램이 우수성, 대중성 및 인지도가 있는 프로그램인가? |
| 프로그램 내용의 순회대상처 적합성 (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획 의도는 적절하여 설득력이 있는가? ○ 수혜 대상을 충분히 분석하여 기획하였으며, 그 의도는 적합한가? ○ 사업내용이 수혜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능력(조직,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사업 운영을 위한 유사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 예산계획 및 규모는 사업 진행에 있어 현실적인가? |

※ 사업유형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심사 진행 가능

- 지원사업 평가결과 활용

- 2017년도 지원신청단체 중 본 사업에 참여하여 최근 3년간(2014 ~ 2016년) 평가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의 경우 해당 평가결과 심의반영

○ **유의사항**

- 신청단체는 사업유형별 중복신청 가능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하신 내용 또는 첨부자료(사진 등)가 신청 단체의 작품이 아니거나 허위일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나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
- 사업 진행 중 주요변동사항(사업기간, 인력, 내용, 예산 등의 추가 및 누락) 발생 시 예술위원회와 필히 협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공문 등을 통한 승인절차 필요
-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법규(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본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제 권리(저작권재산권 등)와 관련하여 반드시 예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 적용해야함
- 선정단체는 사업의 공식 수행기간 동안 사업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협약을 체결해야하고, 프로그램 진행시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할 안전대응방안 등을 제출해야함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및 지원금 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추진일정**

- 신청접수기간 : **2016.12.26.(월) 10:00 ~ 2017.01.11.(수) 18:00까지**
- 사업설명회
 - 2016.12.15.(목) 14:00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1층 화암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32)
- 심의일정
 - 심의 준비 및 심의 진행 : 2017.1월 ~ 2월
- 결과발표 : **2017.2월 초(예정)**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및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홈페이지 신나는 예술여행(www.artstour.or.kr)에 게시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단체 개별통보
- 사업기간 : 2017.3월 ~ 12월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 ※ 이메일,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 2017.1.11.(수) 18:00 이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부터는 입력 불가
 - ※ 접수 마감일 임박한 '17.1.9.(월)~1.11.(수)은 시스템 접속이 폭주할 수 있으므로 접수시 유의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 제출서류

-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내 **신청개요, 수입예산, 지출예산** 작성
- ② **첨부파일**(파일당 100Mb 한정)
 - 지원신청서 양식(한글)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증빙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부)
 -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사항 있을 시)
-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팜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회사업부 (58217)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7년 소외계층문화순회-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참고자료(신청단체명)

○ 문의처

- 이웃사촌순회사업 : 061-900-2269
- 대규모공연순회사업 : 061-900-2252
- 도서지역순회사업 : 061-900-2257
- 성과확산순회사업 : 061-900-2251

지출예산 작성 요령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2016.2)

-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모든 항목은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붙임1)」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문예진흥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단, 사업유형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집기 구입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 사업 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단, 외부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등 사업 성격상 필요할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 <p style="margin-top: 10px;">※ 위 항목 중 위원회가 사전에 승인한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p> |

○ 지출예산 작성 시 유의사항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15%내외 고려(검토를 통해 총 사업예산 및 추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 홍보물은 공통 디자인양식 사용으로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통일성 강조
- 수수료(회계검사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상해보험료) 편성 필수
- 장소 임차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 등으로 임차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체 소유 공간일 경우 임차비 책정 불가
- 본 사업은 자부담 증빙 의무가 없는 지원사업이므로 지출총금액과 지원신청액은 반드시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되어야 함
- 기자재 및 악기의 경우, 임차비를 감소,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함(비소모성 물품으로서 자산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품목은 구입이 불가하며 대여하여 진행)
 - ※ 조명, 음향 등의 무대기기 임차료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준(안) 배포 예정
 - ※ 예술위원회(무대예술부) 상호 검토를 통해 임차료 적정성 확인

※ 상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예술위원회와 사전 협의 하에 예산책정 및 집행 가능

(안내) 예산편성 - 지급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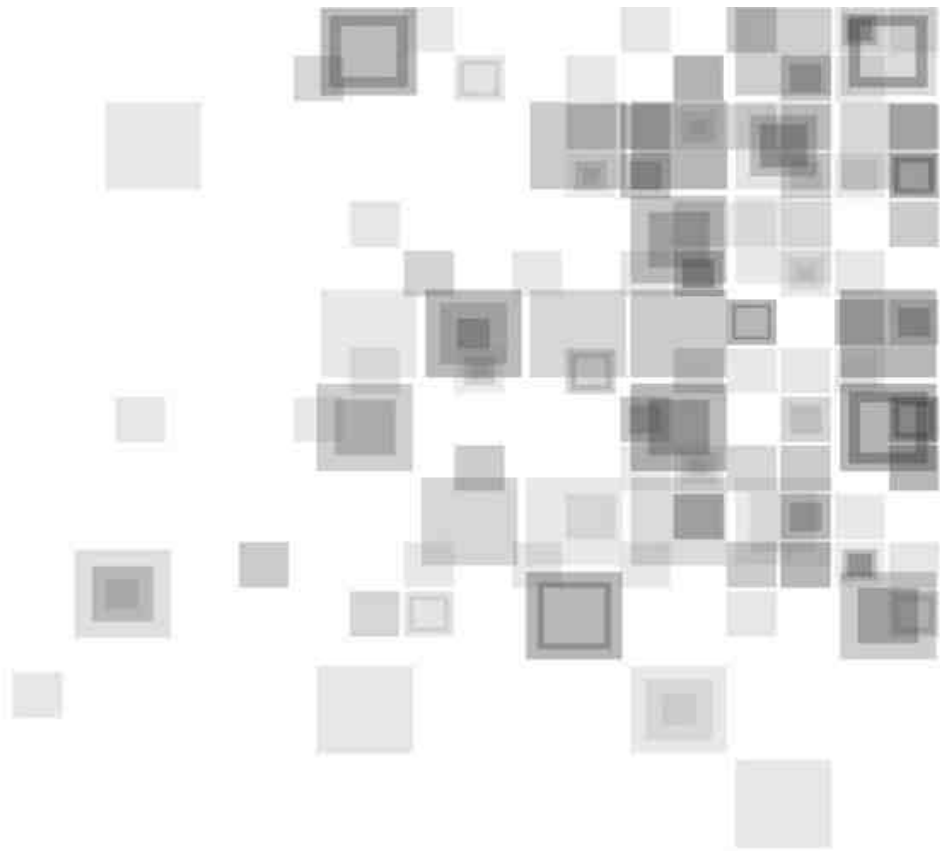
| 세목 | 항목 | 지급유형 |
|--------------|-----------------------------|---|
| 보수 | 인건비(직원 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예산의 15% 내외 고려 ○ 기획·홍보 운영 인건비 |
| 일반 수용비 | 사례비(스텝, 출연진, 연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비 (출연료, 심사, 자문 등) ※ 식비(1인 1일 최대 20,000원) 포함 편성 |
| | 홍보 및 마케팅(인쇄물, 홍보물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 홍보물 등 |
| | 재료비(재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품, 공연 추진 재료비 |
| | 수선비(무대소품, 의상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선비(무대소품, 의상 등) |
| | 수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검사수수료 |
| 임차료 | 장비, 소품 대여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임차 (대형버스 등)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음향 등 무대기기 임차 및 소품 대여 |
|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및 제세(보험, 우편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및 제세(여행자보험, 우편료 등) |
| 국내 여비 | 교통 및 체재비 (항공, 숙박비, 운송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료(도로교통비), 유류비, 용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고속버스, 기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비 (1인 1일 최대 50,000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답사비(공무원 여비지급 참조) ※ 일비 편성 불가, 답사보고서 제출 필수 |

(예시) 지출예산

| 산출 근거 | | |
|---------------------------------------|------------------|-------------------------------------|
| ▷안 좋은 예 | 항목 | ▶좋은 예 |
| 인건비 (보수, 계약직급여) 6,300,000원*1개월 | 인건비 | 프로그램 기획 인력 2,500,000원*1개월(5월분) |
| | | 프로그램 행정 인력 2,000,000원*1개월(5월분) |
| | | 프로그램 운영 인력 1,800,000원*1개월(5월분) |
| 사례비 (스텝, 출연진, 연출) 2,100,000원*1회 | 사례비 | 스텝 200,000원*2인*1회/식비포함 |
| | | 출연진 250,000원*5인*1회/식비포함 |
| | | 연출 450,000원*1인*1회/식비포함 |
| 현수막, 리플렛, 배너 250,000원*1식*1회 | 홍보 및 마케팅 | 리플렛 100,000원 (500원*200매*1회) |
| | | 현수막 100,000원 (100,000원*1매*1회) |
| | | 배너 50,000원 (50,000원*1대*1회) |
| 재료비 200,000원*1식*1회 | 재료비 | 재료비 (인형재료50개/찰흙50개) 200,000원(1회 기준) |
| 차량 160,000원*1회 | 임차료 | 차량 (승용차 2대 80,000원*1회) |
| 조명 300,000원*1회 | | 조명 (핀 조명 등 300,000원*1식*1회) |
| 음향 700,000원*1회 | | 음향 (스피커 등 700,000원*1식*1회) |
| 도로교통비 50,000원*1회 | 국내 여비 | 도로교통료(카드구입비 미포함 50,000원*1회) |
| 유류비 90,000원*1회 | | 유류비 (서울↔부산 90,000원*1회(지역별 상이)) |
| 숙박비 200,000원*1박 | | 숙박비 50,000원*1박*4인 |
| 사전답사비 250,000원*1회 | | 사전답사비(식비, 교통비 등) 250,000*5회 |
| 보험 100,000원*1회 | 공공 요금 및 제세 | 보험 (5월7일/출연진8인) 100,000원*1회 |

2017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 공모 안내

3.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문학순회)



공모 안내

○ 사업목적

- 한국문학의 독자 저변을 넓히고 문학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학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에 다양한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

○ 지원신청자격

- 지역 단위 문화예술 순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단체
 - 문화예술 관련협회 및 단체, 예술단체, 기획사, 산학협력단, 광역·기초 지역권 문화재단, 광역·기초 지역권의 공공문화기관, 지역문학관 등
 - ※ **사업에 참여하는 기획운영 전담인력은 3년 이상 유경험자에 한함(경력증빙 필수)**
 -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만 지원가능 합니다.
- 최근 2년간 유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
-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지침」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에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사업

- 2017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동일단체의 동일사업)
- 2017년 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개인
- 직전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 직전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내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함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함.
 - ※ 기존 지원사업이 해당 사업년도 내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지침」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 등 공공연하게 표절시비가 있는 단체·개인

○ 지원대상사업

- 지원대상 프로그램

-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향수 기회 제공이란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한국문학과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문학 향유 프로그램(작가와의 만남, 문학콘서트, 문학기행 등)을 기획하여 제공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 수혜대상 및 사업내용(예시) | 선정 단체수 | 단체별 예산안 | 단체별 순회횟수 |
|-------|----------|--|--------|---------|----------|
| 문학 순회 | 일반예술단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공간 등을 활용한 문학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문학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대상 ○ (사업장소) 지역 문화공간(학교, 도서관, 창작공간, 서점, 공연장 등) | 10개 | 최대 3천만원 | 최소 5회 이상 |
| | 지역문학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역문학관에서 지역민 및 문학관 방문객에게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제공 ○ (사업대상) 전국 지역문학관 지역민 및 방문객 대상 ○ (사업장소) 전국 지역문학관 | 20개 | 최대 1천만원 | 5회 내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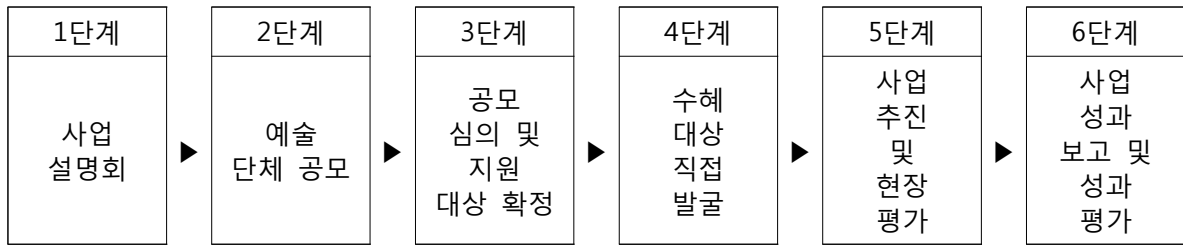
※ 참고 사항 : 문학작가 직접 참여 프로그램 선호

※ 선정 단체 수, 프로그램 횟수 및 예산은 추진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운영단체의 역할(예시)

| 구분 | 역할 | 세부내용 |
|-------|-----------------|---|
| 준비 | 수혜자 특성 이해 | ○ 기획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문가, 순회대상처 담당자 등의 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대상, 장소 특성을 파악 |
| | 프로그램 기획 | ○ 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정·보완 |
| | 순회대상처 발굴 | ○ 신청 순회대상처 외 추가 순회대상처 발굴 진행 |
| | 사전답사 | ○ 사전답사 등을 통한 수요조사 및 환경 분석 |
| | 홍보계획 수립 | ○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
| 추진 | 일정협의 및 안내 | ○ 순회대상처별 프로그램 추진 일정 협의 및 프로그램 내용 안내 |
| | 공연 프로그램 제공 | ○ 대상, 장소 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
| | 모니터링 협조 | ○ 연중 사업 담당자 및 전문가 등 모니터링 진행 |
| | 프로그램 평가 협조 및 독려 | ○ 연중 순회대상처 평가 진행을 위하여 안내 및 독려 |
| | 사업 홍보 추진 | ○ 연중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도자료 등 배포 협조 및 독려 |
| 성과 공유 | 사업성과 확산 및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 네트워크를 위한 성과확산 순회 참여 협조 ○ 성과확산을 위한 워크숍 참석 |
|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 사업 추진 결과 보고 및 정산 완료 |

○ 추진절차



○ 지원규모

| 사업유형 | 지원규모 | 공통사항 |
|----------|--|---|
| 일반예술단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당 기준은 500만원 내외로 하되,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총 지원 상한 금액은 3,000만원 이내이며, 최소 5회 이상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지원 ○ 공연 장소에 따라 도서지역 교통비 추가지급 가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심의 시 세부내역 및 적정예산 검토 ○ 지원 금액은 출연료, 이동경비, 숙박비, 식비, 제반시설 임차비(조명, 음향, 무대 등), 홍보물 제작비, 보험료, 사전답사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
| 지역문학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평균 지원금액은 200만원 내외, 총 지원 상한 금액은 1,000만원 이내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는 자율 편성 | |

※ 프로그램 횟수 및 예산은 추진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심의방법

- 심의고려사항
 - 유형별 순회대상처의 특수함을 고려한 수혜대상 발굴과 참여대상자 동기부여 방안
 - 대상자 및 프로그램 기획의 다양성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
 - 지속적인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역량 등
- 지원심의기준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 사업계획 (프로그램)의 충실성과 작품성(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신청한 프로그램이 우수성, 대중성 및 인지도가 있는 프로그램인가? |
| 프로그램 내용의 순회대상처 적합성 (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획 의도는 적절하여 설득력이 있는가? ○ 수혜 대상을 충분히 분석하여 기획하였으며, 그 의도는 적합한가? ○ 사업내용이 수혜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능력(조직,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사업 운영을 위한 유사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 예산계획 및 규모는 사업 진행에 있어 현실적인가? |

- 지원사업 평가결과 활용
 - 2017년도 지원신청단체 중 본 사업에 참여하여 최근 3년간(2014 ~ 2016년) 평가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의 경우 해당 평가결과 심의반영

○ 유의사항

- 사업 장소에 따라 유형 선택
 - 신청단체가 일반예술단체이지만 사업 장소가 지역문화관일 경우 유형2 선택(유형1의 경우 지역 문화관에서 추진 불가)
 - 신청단체가 지역문화관이지만 사업 장소가 문학 소외지역일 경우 유형1 선택
- 사업 장소 운영주체와 추진일정 협의 후 신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하신 내용 또는 첨부자료(사진 등)가 신청 단체의 작품이 아니거나 허위일 경우, 문화예술진흥 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나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
- 사업 진행 중 주요변동사항(사업기간, 인력, 내용, 예산 등의 추가 및 누락) 발생 시 예술위원회와 필히 협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공문 등을 통한 승인절차 필요
-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법규(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본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제 권리(저작권재산권 등)와 관련하여 반드시 예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 적용해야함
- 선정단체는 사업의 공식 수행기간 동안 사업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해야하고, 프로그램 진행시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할 안전대응방안 등을 제출해야함
- 사업지원 확정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및 지원금 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추진일정

- 신청접수기간 : 2016.12.26.(월) 10:00 ~ 2017.01.11.(수) 18:00까지
- 사업설명회
 - 2016.12.15.(목) 14:00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1층 화암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32)
- 심의일정
 - 심의 준비 및 심의 진행 : 2017.1월 ~ 2월
- 결과발표 : 2017.2월 초(예정)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및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홈페이지 신나는 예술여행(www.artstour.or.kr)에 게시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단체 개별통보
- 사업기간 : 2017.3월 ~ 12월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 ※ 이메일,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 2017.1.11.(수) 18:00 이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부터는 입력 불가
 - ※ 접수 마감일 임박한 '17.1.9.(월)~1.11.(수)은 시스템 접속이 폭주할 수 있으므로 접수시 유의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 제출서류

-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내 신청개요, 수입예산, 지출예산 작성
- ② 첨부파일(파일당 100Mb 한정)
 - 지원신청서 양식(한글)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증빙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부)
 -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사항 있을 시)
-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팜플릿, 책자, 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회사업부 (58217)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7년 소외계층문화순회-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문학순회) 참고자료(신청단체명)

○ 문의처

- 문학순회사업 : 061-900-2325

지출예산 작성 요령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2016.2)

-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모든 항목은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붙임1)」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문예진흥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단, 사업유형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집기 구입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 사업 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단, 외부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등 사업 성격상 필요할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 <p>※ 위 항목 중 위원회가 사전에 승인한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p> |

○ 지출예산 작성 시 유의사항

- 프로그램 총 진행횟수가 포함된 비용으로 작성 요구
 - ※ (유형1)의 경우 프로그램 1회 평균 지원금액은 500만원 내외로 하되,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총 지원 상한 금액은 3,000만원 이내이며, 최소 5회 이상 진행 필요
 - ※ (유형2)의 경우 프로그램 1회 평균 지원금액은 200만원 내외, 총 지원 상한 금액은 1,000만원 이내이며,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는 자율 편성 가능
 - ※ 프로그램 횟수 및 예산은 추진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장소 임차**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 등으로 임차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체 소유 공간일 경우 임차비 책정 불가
- **기자재 및 악기**의 경우, 임차비를 감소,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비소모성 물품으로서 자산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품목은 구입이 불가하며 대여하여 진행).
 - ※ 조명, 음향 등의 무대기기 임차료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준(안) 배포 예정(추후 안내)
 - 예술위원회(무대예술부) 상호 검토를 통해 임차료 적정성 확인
- 본 사업은 자부담 증빙 의무가 없는 지원사업이므로 지출총금액과 지원신청액은 반드시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되어야 함
- 추측에 의한 예산 산출 및 과다 책정 등은 소요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지원심의 시 낮은 점수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필요
 - ※ 상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예술위원회와 사전 협의 하에 예산책정 및 집행 가능

(안내) 예산편성 - 지급유형

| 세목 | 항목 | 지급유형 | | | | |
|--------------|-----------------------------|--|----|-------|-----|------------------|
| 일반 수용비 | 사례비(스텝, 출연작가, 기획 등) | ○ 사례비 (출연료, 심사, 자문 등) | | | | |
| | 홍보 및 마케팅(인쇄물, 홍보물 등) | ○ 홍보 및 마케팅(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 | | | |
| | 재료비(재료 등) | ○ 소모품, 공연 추진 재료비 | | | | |
| 임차료 | 장비, 소품 대여비 등 | ○ 차량 임차 (대형버스 등) | | | | |
| | | ○ 조명, 음향 등 무대기기 임차 및 소품 대여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및 제세(보험, 우편료 등) | ○ 공공요금 및 제세(여행자보험, 우편료 등) | | | | |
| 국내 여비 | 교통 및 체재비 (항공, 숙박비, 운송 등) | ○ 통행료(도로교통비), 유류비, 용달 | | | | |
| | | ○ 교통비(고속버스, 기차) ※ 교통비를 포함할 경우 원거리(서울-부산)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사업선정에 따른 교부신청 시 배정지역에 맞게 예산 조정 | | | | |
| | | ○ 사전답사비(공무원 여비지급 참조) ※ 일비 편성 불가, 답사보고서 제출 필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내역</th> <th>지원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숙박비</td> <td>50,000원 / 1박(1인)</td> </tr> <tr> <td>식비</td> <td>20,000원 / 1일(1인)</td> </tr> </tbody> </table> ※ 사례비에 식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시면 추후 정산 시 편리합니다. | 내역 | 지원 금액 | 숙박비 | 50,000원 / 1박(1인) |
| 내역 | 지원 금액 | | | | | |
| 숙박비 | 50,000원 / 1박(1인) | | | | | |
| 식비 | 20,000원 / 1일(1인) | | | | | |

(안내) 예산편성 - 지급유형

| 산출 근거 | | |
|------------------------------------|-----------------|--------------------------------|
| ▷안 좋은 예 | 항목 | ▶좋은 예 |
| 사례비(스텝, 출연작가, 기획) 2,100,000원*5회 | 사례비 | 스텝 200,000원*2인*5회/식비포함 |
| | | 출연작가 250,000원*5인*5회/식비포함 |
| | | 기획 450,000원*1인*5회/식비포함 |
| 현수막, 리플렛, 배너 250,000원*1식*5회 | 홍보 및 마케팅 | 리플렛 500,000원 (500원*200매*5회) |
| | | 현수막 500,000원 (100,000원*1매*5회) |
| | | 배너 250,000원 (50,000원*1대*5회) |
| 재료비 200,000원*1식*5회 | 재료비 | 재료비 (책50권/자료집50개) 200,000원*5회 |
| 차량 160,000원*5회 | 임차료 | 차량 (승용차 2대 80,000원*5회) |
| 조명 300,000원*5회 | | 조명 (핀 조명 등 300,000원*1식*5회) |
| 음향 700,000원*5회 | | 음향 (스피커 등 700,000원*1식*5회) |
| 도로교통비 50,000원*5회 | 국내 여비 | 도로교통료(카드구입비 미포함 50,000원*5회) |
| 유류비 90,000원*5회 | | 유류비 (서울↔부산 90,000원*5회(지역별 상이)) |
| 숙박비 200,000원*5박 | | 숙박비 50,000원*5박*4인 |
| 사전답사비 250,000원*5회 | | 사전답사비(식비, 교통비 등) 250,000*5회 |
| 보험 100,000원*5회 | 공공요금 및 제세 | 보험 (5월7일/출연진8인) 100,000원*5회 |
| ※ 총 금액 기준으로 편성 | | |